

海外原油需給狀況과 展望

金 濟 華

〈調達廳 物價調査課 事務官〉

I. 世界의 石油需給狀況과 앞으로의 展望

79년 1~10월의 OPEC의 原油生産量은 이란의 生産量 회복과 대부분 加盟國의 增産으로 78년 同期에 비해서 약 3%를 上廻하는 등 石油需給狀況은 巨視的으로는 큰 不均衡에 直面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①앞으로 OPEC의 生產展望은 이란 情勢의 動向과 OPEC 諸國의 生產調整의 움직임 등으로 인해 樂觀을 할 수 없고 또한 非OPEC 產油國의 輸出餘力에도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中長期적으로는 石油需給의 逼迫化가 豫想된다.

② 이란 政情을 계기로 石油의 流通 루트가 國際石油資本으로부터 產油國自身의 손으로 크게 옮겨지고 있으며 石油資本들은 이에 따라 石油取扱量의 減少에 대해서 非系列會社에 대한 供給削減으로 對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石油의 供給에 대한 不安全感으로 石油市場에 있어서 逼迫感이 엿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國際石油市場에 있어서 逼迫感을 背景으로 OPEC 諸國은 79년 10月以後 잇따라 公式販賣價格의 價格을 引上實施하고 OPEC 總會直前에는 사우디 아라비아 등 穩健派가 價格을 引上(標準原油 18 \$/bbl에서 24 \$/bbl)한데 대해서 리비아 등은 다시 追加로 價格을 引上하여 30 \$/bbl의 原油마저 出現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各國이 個別의으로 價格을 引上하여 分裂된 價格體係를 유지하고 있어 79년 12월의 OPEC 總會에서는 標準原油의 價格을 24 \$/bbl로 主張하는 사우디 아라비아 등 穩健派

와 30 \$/bbl 前後로 할 것을 主張하는 리비아, 이란 등 強硬派 사이에妥協이 成立되지 못하고 閉會하였다.

이 때문에 原油價格은 統一的인 기준이 없고 需給의 實勢에 맡겨져 있다.

한편 原油의 spot 價格에 있어서도 OPEC의 原油供給에 대한 앞으로의 不安 등을 反映하여 아직도 高水準의 趨勢에 있으며 따라서 世界經濟全般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사태속에서 先進消費國은 東京 頂上會談 以後 에너지 閣僚會議, IEA(國際에너지機關) 등을 통해서 石油需要抑制措置의 奨勵, 代替 에너지의 개발과 촉진, 石油輸入上限 또는 輸入目標의 設定 등을 통해 能動적인 對應姿勢를 취하고 있다.

즉 國際石油情勢의 逼迫化에 對應하여 IEA는 78년 3월의 理事會에서 약 5%의 石油消費를 節約하는데 合意하고 5월의 理事會에서 80년에 있어서도 節約措置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이어서 6월의 東京頂上會談에 있어서는 頂上國의 1980년과 1985년의 石油輸入目標가 설정되었으며 9월의 에너지 閣僚會議에서는 EC國別目標가 명확히 表示되었다.

또한 IEA에서도 1980년 및 1985년의 國別輸入目標를 檢討하여 작년 12월 10일의 閣僚理事會議에서는 ① 1980년과 1985년의 國別石油輸入目標의 設定 ② 1980년 1/4 分期에 開催되는 理事會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1980년의 石油輸入上限의 調整 등에 관한 檢討와 ③ 理事會에

의한 分期別 모니터링 實施 ④ 1985년 그룹 輸入目標의 改定을 통해 對處해 나가기로 合意하였다.

上記와 같은 石油輸入目標의 設定, 5% 節約 등의 多國間協力에 대해서는 產油國도 評價를 하고 있으며 또한 당면의 石油需給逼迫의 改善에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中期의으로는 石油需給이 逼迫化할 것만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巨視的 立場에서 需給緩和를 위해서 多國間協調에 의한 石油節約의 推進과 代替 에너지의 開發促進을 강력히 실시할必要가 있는 것이다.

한편 지난 6월 11일 OPEC 總會는 共同 코뮤니케를 採擇하고閉幕했는데 同總會의 最大焦點은 原油價格의 統一이었으나 ①基準價格의 上限價格를 32\$ (1 bbl 當 FOB)로 하며 ②디퍼렌셜은 어떠한 경우에도 5\$를 上廻하지 않도록 하며 ③이 價格體系는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금년 가을에 開催되는 合同會議에서 再檢討하기로 合意한 바 이는 傳統的인 價格差보다는 크지만 5\$幅으로 抑制함으로써 현재의 여러가지 價格에 의한 混亂狀態를 收拾하는 方向으로 한걸음 닥아선 것이다.

總會後 이락, 쿠웨이트, 나이제리아 등 코뮤니케의 範圍內에서 價格引上을 通告해 왔으며 世界最大의 產油國이며 穩健派인 사우디 아라비아는 아직은 어떠한 行動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新價格體系의 目的是 產油國에 있어서 生產者와 消費者雙方에 이롭지 못한 備蓄의 積增을 回避하기 위해서 供給과 需要의 均衡을 이룩하는데 있었으나 사우디 아라비아는 종전과 같이 하루에 100萬 bbl의 增產을 계속중이며 世界第2의 產油國인 이락도 油價引上을 通告하고 增產指向을 더욱 強化하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穩健派인 아랍에미리트연합국외에 中立의인 카타르, 인도네시아의 石油政策에서도 엿볼 수가 있어 OPEC 總會의 코뮤니케는 有名無實화할 공산이 크다.

OPEC의 急進派는 OPEC의 產油量을 現在의 推定 1日 2,800萬 bbl에서 2,600~2,650萬 bbl相當으로 自主的으로 削減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다른 產油國(穩健派, 中立派에 대해서)

에 대해서 壓力を 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現時點에서 原油는 하루에 200~250萬 bbl이 暗市場에 나돌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短期의으로는 原油價格은 高價安定趨勢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II. 海外諸國의 石油備蓄狀況

1. 西歐諸國의 石油備蓄制度

유럽 各國의 石油備蓄은 상당히 일찍부터 實시되었다.

즉 1956년 7월 이집트의 스에즈 運河의 國有化에서 發端된 바 당시 스에즈 運河의 閉鎖와 IPC 파이프 라인의 供給中止가 惹起되어 유럽으로 가는 中東原油가 中斷됨으로써 유럽 諸國의 石油不足은 심각하였다.

이 위기는 1956년 8월부터 1957년 4월까지 계속되었으며 유럽 諸國은 消費節約과 美國의 緊急石油援助計劃으로 打開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경향에 비추어 OEEC(1961년 1월에 OECD로 改編)는 1957년 5월에 理事會에서 純消費量의 4週間分의 特別石油備蓄을 實시하도록 勸告하였다.

또한 1962년에는 OECD가 유럽 諸國에 대해서 內陸消費量의 60日分의 備蓄을 加급적 빨리 이룩하고 또한 앞으로는 80~90日分의 備蓄이 必要하다고 勸告하였다.

그 후 1967년 6월에는 이스라엘 對 아랍의 第3次 中東戰爭의 발발로 스에즈 運河가 閉鎖되었으며 美英에 대한 中東產油國의 石油禁輸가 實시되었다.

이러한 經驗을 계기로 OECD는 1971년 6월에 90日分以上的 備蓄을 可及的 빨리 이룩하도록 勸告하였고 이 勸告를 받아 들여 유럽 諸國은 備蓄增強에 努力하였는데 프랑스, 西獨, 이탈리아 등에서는 法律로 石油企業에 대한 備蓄義務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美國에서도 1975년 12월에 勵化政策, 節約法을 制定하여 戰略石油備蓄의 강화에 착수하였다.

2. IEA의 動向

(1) IEA 設立經緯

1973년 10월의 第4次 中東戰爭을 계기로 石油危機의 混亂 속에서 1974년 2월, 美國의 提唱으로 워싱톤 에너지 會議를 개최하였는데 이 會議에는 先進石油消費國 13個國이 參加하여 에너지 問題에 대처할 방침을 검토하고 그 후 會議機構로서 設置된 에너지 調整 그룹에 의한 檢討가 계속되었으며 이 檢討를 거쳐 1974년 11월에 OECD理事會 決定으로 國際에너지計劃(IEP)의 推進과 實시를 위해 OECD內에 자율적인 기관으로서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가 설치되었다.

參加國은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스페인, 美國, 벨지움, 카나다, 덴마크, 西獨, 이탈리아, 日本,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스페인, 스위스, 스웨덴, 터키, 英國, 뉴질랜드, 노르웨이, 處境, 濟洲 등이다.

(2) IEP의 目的

IEP의 目的是 IEA를 通해서 參加國의 石油供給不足 사태에 대비하여 備蓄과 需要抑制, 相互融通 등의 對應策을 강구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節約 및 代替 에너지의 開發 등을 實시함으로써 輸入石油에 대한 依存度를 減少시키는데 있다.

(3) IEA의 主要活動狀況

① 緊急時 對策

○ 備蓄

IEP協定上 參加國은 石油不足 사태에 대비하여 石油備蓄을 유지하기로 되어 있으며 1980년 1월 1일까지 그 양을 90日分까지 增加시키기로 1976년 11월의 理事會에서 決定되었다.

○ 需要抑制 및 相互融通

IEP協定上 石油의 供給이 부족할 경우 ① 參加國은 一定率의 需要抑制를 實시하지 않으면 안되며 ② 需要抑制를 實시해도 供給不足이 발생한 경우에는 備蓄分을 사용함과 동시에 參加國間에入手可能한 石油를 融通함으로써 不足分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② 長期協力對策

○ 長期協力計劃의 採擇

1976年 1月 IEA 參加國은 長期協力計劃을 採擇했는데 同計劃은 需要面에서 省에너지자를 推進함과 同時に 供給面에서 代替에너지의 開發을 促進함으로써 輸入石油 依存度를 減少시키고 IEA 參加國의 經濟的, 政治的 위험을 줄일 것을 計劃하고 있다.

이 때문에 參加國全體로서의 輸入依存度 減少目標를 設定하기로 되어 있다.

○ 輸入石油依存度 減少目標 및 エネルギー政策

12個原則의 採擇

輸入石油依存度 減少目標의 設定에 관해서 美國은 消費國의 強力한 團結을 維持하는 各國別目標를 設定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西獨과 日本 등은 國別目標設定으로 에너지와 같은 經濟活動의 大範圍를 外의으로 拘束하는 일은 自由主義經濟 메카니즘을 부정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앞으로 需給이 逼迫할 때는 石油의 國別割當을 實시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해 왔었다.

이러한 討議를 거쳐 IEA 全體로서의 輸入石油依存度의 減少目標(1985년의 IEA域外로부터의 石油輸入量을 2,600萬 bbl/day 以下로 한다) 및 目標達成을 위해 필요한 エネルギー政策 12個原則이 1977년 10월의 第2回 閣僚理事會에서 採擇되었다.

③ エネルギー研究開發(R & D) 協力

○ 現狀

IEA에 있어서 エネルギーの R & D 協力에 대해서는 エネルギー R & D 戰略의 策定(綜合エネルギー 시스템 分析)을 비롯하여 太陽熱暖房, 太陽發電, 石炭技術, 省エネルギー 등 14個 分科가 R & D委員會 밑에 設置되어 있으며 이 分科 밑에 30個의 R & D 實施協定(43 project)이 締結되어 있다.

④ 石油市場對策 및 產油國과 消費國對話問題

○ 石油市場對策

國際石油市場의 狀況 및 石油會社의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參加國으로부터 原油 코스트, 輸入價格 및 資本投資實績 등의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國際石油會社와 石油需給展望 등에 관해서 協議하고 있다.

○ 產油國과 消費國의 對話問題

IEA는 產油國과의 對決을 피하고 協力關係를 促進하기 위해서 產油國의 工業 16促進 및 社會開發 등에 대해서 檢討를 하기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觀點에서 國際經濟協力會議(CIEC) 後의 에너지 對話を 어떻게 再開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檢討를 하고 있다.

(4) 緊急融通 組織의 概要

① 全體的發動

- 그룹 전체의 石油供給削減이 通常消費水準의 7% 以上, 12% 未滿(12% 以上)인 때에는 各國은 7%(10%)의 需要抑制를 實施하고
- 上記의 需要抑制로도 커버할 수 없는 그룹 全體의 不足量에 대해서는 各國의 備蓄을 保有義務量에 따라 사용하여 그룹 전체로서 平常時의 93%(90%) 水準의 供給을 確保한다.
- 또한 나머지 各國別 供給量의 不均衡量에 대해서는 各國이入手可能한 石油를 相互融通함으로써 各國別로 備蓄使用量을 包含한 供給을 各國이 모두 平常時의 93%(90%)의 수준이 되도록 한다.
- 또한 備蓄量이 50% 減少된 時點에 있어서는 需要抑制를 더욱 強化한다.

② 選擇的發動

1個國 또는 數個國만이 7% 이상의 供給削減을 받을 경우에는 當該國은 7%의 需要抑制를 실시하여 各國이入手可能한 石油를 融通한다.

減少水準	參加國에 의한 措置
A. 7% 未滿	但, 7%를 넘는 減少가 보이는 國家가 있으면 融通을 發動하며 當該國은 7% 需要抑制
B. 7% 以上 12% 未滿	① 需要抑制 7% ② 抑制後의 不足量은 備蓄分使用 ③ 93% 상당량과 備蓄使用分의 差는 各國輸入分으로서 配分한다. (融通).

C. 12% 以上	① 需要抑制 ② B와 같음 ③ 90% 상당량과 備蓄使用分의 差는 各國輸入分으로서 配分한다 (融通)
X. 附加的條件	備蓄使用量累計가 備蓄量의 50%에 달하면 필요한 需要抑制를 實시한다.

3. 유럽 主要國의 備蓄制度

◇ 프랑스

(1) 法的根據

1951년, 1958~1959년 및 1975년의 公布法律 및 命令

(2) 對象油種

- ① 自動車개소린(航空機燃料를 例外)
- ② 輕油, 暖房用燃料油
- ③ 輕質, 重質重油

(3) 現行 備蓄義務의 主要內容

- ① 石油販賣業者(石油製品의 輸入, 販賣許可를 가진 者)
 - ② 過去 12個月間의 國內需要의 1/4(약 90日分)
 - ③ 다음 要領에 의거 原油로 代替할 수가 있다.
 - 自動車用개소린, 輕油, 家庭用燃料의 40%까지
 - 輕質, 重質重油의 50%까지
 - 製品 1톤當 原油 1.25ton으로 換算
 - 自動車用 개소린 備蓄은 40%를 配給機構, 60%를 製油所에서 保有한다.
 - 最終製品이 브랜드에 의해서 얻어질 경우에는 中間製品의 形태로 保有할 수 있다.
- ② 原油輸入業者(原油輸入許可를 가진 者)
 - 製造上 필요한 45日分, 그 중 10日分은 原油保有可
 - ③ 通常操業上 필요한 在庫는 備蓄에 包含
 - ④ 備蓄義務는 每月 政府에 대해서 報告義務를 갖는다.
 - ⑤ 政府와 業界間의 紳士協定에 의해 精製能

力에 충분한 餘分을 갖거나

- 配給段階에서 家庭用 燃料油, 重油를 追加備蓄 하도록 決定하고 있는데 피크 需要對策 또는 冬寒對策 때문임.

(6) 國產原油에서 生産되는 製品은 備蓄對象에서 除外

(7) 西獨과의 사이에 其他地域에 있어서의 備蓄協定이 있음.

(4) 金融 및 稅制措置

- ① 政府의 支援은 없으며
- ② 備蓄 코스트는 公式的으로 製品價格에 包含시킨다.

< 75~76年の 包含 코스트 >

개소린 4.8 F/m³

輕油 39 "

暖房油 3.9 "

重油 2.95 "

(3) 暖房用燃料油에 대해서는 季節在庫의 코스트가 別途公式價格에 包含되어 있어 政府는 이追加分이 企業에서 發生한 코스트分을 넘지 않도록 체크할 수가 있다.

(5) 앞으로의 規制

- ① 石油業界는 모든 製品을 55%까지를 原油로 代替할 수 있도록 要求하고 있다.

◇ 西 獨

(1) 法的根據

1978년 8월 石油備蓄法

(2) 對象油種

- ① 自動車用 개소린, 航空機用 燃料油
- ② 灯油, 航空터빈燃料油
- ③ 디젤燃料油, 輕質燃料油
- ④ 中質, 重質燃料油

(3) 現行 備蓄義務의 主要內容

- ① 石油備蓄聯盟(公法人, 石油精製業者, 石油輸入業者로 構成)

- 前年度石油製品 生産量(輸出 등 除外)의 65日分
- 原油로서 備蓄의 代替를 할 수가 있음.

② 前年度의 石油製品 生産量의 25日分

- 原油로서 備蓄의 代替를 할 수 있음.

(4) 金融 및 稅制措置

- ① 積立金의 創設(1980년 7월 말까지)

73년 12월 31일 현재의 備蓄保有하는 者에 대해서는 備蓄積增量 25日分 相當分의 積立金을 認定, 課稅對象에서 除外한다.

積立期間 10년 据置後 5年間에 益金算入

- ② 備蓄 코스트를 送狀에 別記할 것을 認定한다.

(5) 앞으로의 規制(國家備蓄計劃)

- ① 最終目標規模 약 800萬ton

- ② 1977年末現在 保有量 500萬ton

◇ 이탈리아

(1) 法的根據

戰前 및 1961년, 1968년, 1971년, 1976년 公布의 法律

(2) 對象油種

- ① 自動車 개소린, 航空機用 燃料油
- ② 灯油
- ③ 輕油
- ④ 重油
- ⑤ 潤滑油, LPG (貯藏用에 限함)

(3) 現行 備蓄義務의 主要內容

- ① 石油精製業者

- 前年國內消費實績의 90日分

- 各精製企業은 原油處理量에 따라 備蓄義務를 진다(輸出分 包含).

- 各製品은 政府指示를 얻어 原油로 備蓄 할 수 있음.

- ② 石油輸入業者

- 180 톤을 넘는 配給 터미날 能力의 20% (2~3日分 : 例를 들면 터미널 能力を 100이라 하면 이 중에서 20을 備蓄分, 80을 年間 40回轉할 수 있다고 하면 年間販賣量은 3,200이 되며 備蓄의 日數는 $\frac{360\text{日} \times 20}{3,200} = 2$ 또는 3日임)

③ 通常操業上 필요한 在庫는 備蓄에 포함한다.

④ 西獨과의 사이에 西獨用備蓄을 保有하는 協定이 締結되어 있음.

⑤ 國產原油로부터 生産되는 製品은 備蓄對象에서 除外됨.

(4) 金融 및 稅制措置

① 政府의 支援은 없으며

②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새로운 價格制度(CIP方式)에서는 텩크 投資 20個年間 減價償却 및 投資, 在庫에 관한 稅免除前 8% 金利를 基準으로 하여 備蓄 코스트 전체의 70% (약 50日分)를 커버할 豫定이다.

◇ 英 國

(1) 法的根據

1976년 11월 에너지法 및 備蓄에 관한 部令

(2) 對象油種

① 自動車用 개소린, 航空機用 燃料油

② 灯油, 輕油

③ 重油

(3) 現行 備蓄義務의 主要內容

① 石油精製業者

○ 前年國內消費實績의 75日分의 在庫量

② 石油輸入業者

○ 前年度 國內消費實績의 60日分의 在庫量

③ 通常操業上 필요한 在庫는 備蓄에 包含한다.

④ 備蓄義務量의 88%까지를 原油로 保有할 수가 있음.

⑤ 石油企業은 政府에 대해서 在庫量의 報告가 要求되고 있음.

(4) 金融 및 稅制措置

① 政府支援은 없으며

② 製品價格의 引上時에 政府의 價格委員會는 備蓄 코스트의 轉嫁를 認定함과 동시에 一定基準 이상의 利益을 保證한다.

◇ 벨지움

(1) 法的根據

1971년에 公布한 法律

(2) 對象油種

① 自動車用 개소린, 航空機燃料(AV GAS, JP 4)

② 輕油, 灯油 및 JP 1A, 輕質油

③ 重油

(3) 現行 備蓄義務의 主要內容

① 石油精製業者 및 輸入業者

○ 前年度 國內消費實績의 18% 또는 約65日分

○ 各企業은 最低 9,000吨의 備蓄施設을 保有하고 上記 對象油種 3種類의 範圍에 따라 最低 6,000 ~ 7,000吨을 保有하지 않으면 안된다.

○ 各製品은 50%까지 原油로 代替할 수 있음.

② 通常操業上 필요한 在庫는 備蓄에 包含한다.

③ 國產原油로부터 生産되는 製品分은 國內消費量의 15%를 限度로 備蓄義務에서 除外됨.

④ 西獨, 네덜란드와의 사이에 兩國을 위해 備蓄에 관한 協定이 있음.

(4) 金融 및 稅制措置

① 政府支援은 없으며

② 備蓄 코스트는 政府의 最高價格制 속에 다음과 같이 包含되어 있다.

○ 中間製品 약 \$ 39/bbl

○ 重油 약 \$ 35/bbl

(5) 앞으로의 規制

① OECD 및 EEC가 勸告한 90日分의 備蓄強化를 위해 新しい 法律이 마련되어 있음.

② 90日分으로 增強하기 위해 業界共同의 approach(備蓄金融을 目的으로 한 利益 있는 團體—Association Sans but lucratif)가 檢討되고 있으며 政府資金에 의한 金融 또는 政府保證에 의한 借款確保를 指向하고 있다.

◇ 스위스

(1) 法的根據

戰爭時의 經濟政策에 관한 聯邦法 및 關聯政府規制

(2) 對象油種

- ① 自動車用 개소린
- ② 灯油, 輕油, 暖房用燃料
- ③ 重油

(3) 現行 備蓄義務의 主要內容

① 石油精製業者 및 輸入業者

- 前年度 國內消費實績을 基準으로 1976년까지 6個月間의 備蓄保有가 義務化되고 있으며
- 備蓄計劃은 스위스의 液體燃料輸入의 中央 신디케이트(Carbura)가 實시하고 있으며 聯邦政府는 Carbura의 執行委員會에 代表 1名을 參加시키고 있는 바 이 代表는 業界에서 勸告를 받아 備蓄所要量을 결정한다.
- 企業에 대한 備蓄의 配分은 Carbura가 各企業의 輸入量에 따라 實施하며 備蓄의 대부분은 企業의 시설로 保有되나 政府의 備蓄施設에 保有하는 일도 있다.
- 年度別 備蓄計劃은 翌年度 및 2~4년의 所要量을 나타내고 있음.

② 6個月分의 備蓄 외에 備蓄量의 最低 $\frac{1}{10}$ 에 상당하는 操業上의 탱크施設을 保有하도록 되어 있다.

(4) 金融 및 稅制措置

① 備蓄計劃의 資金은 銀行에 의해 다음과 같이 실시되고 있음.

- 탱크施設을 위해 필요한 資金은 모두 石油企業에 의해 通常의 資本市場에서 調達되며
- 在庫品價值의 90%는 貸付制限에서除外되며 또한 銀行이 融資回避함이 없이 中央銀行의 割引金利—特利로 融資되고 있다.
- 탱크 시설에 대한 Carbura의 保證은 이

에 관한 용자의 抵當保證으로서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在庫品은 在庫融資의 擔保가 된다.

政府는 備蓄義務를 解除하였을 때에는 損失(또는 利益)을 保證하고 있으며 이 메카니즘은 備蓄을 위한 시설과 在庫에 대한 融資를 政府가 保證하고 있기 때문이다.

② Carbura는 輸入製品에 料金을 賦課하고 輸入業者는 이들 料金을 關稅와 같은 方법으로 소비자에게 轉嫁하며 料金은 다음과 같다.

- 自動車用 개소린 약 ₩ 65/bbl
- 中間製品 및 重油 약 ₩ 39/bbl
- 램프用 燈油 3 SF/t

③ Carbura는 賦課金收入을 財源으로 하여 備蓄 탱크 시설 및 在庫量에 따라 다음 備蓄 코스트 补填을 위해 石油企業에 償還한다.

- 平均 建設 코스트에 따른 탱크 시설의 6年間 減價償却費
- 탱크 시설에 所要된 資金에 대해서 市場金利로서의 金利 코스트
- 在庫 100% 融資에 대해서의 金利 코스트
- 業界平均基準으로서의 기타 모든 運轉 코스트(保險料, 減耗, 運營費 등)

◇ 스웨덴

(1) 法的根據

1969년에 公布한 法律(適用期限 1970~1971년)

(2) 對象油種

- ① 自動車用 개소린, 燈油(航空機 燃料를 除外)
- ② 輕油
- ③ 重油
- ④ LPG, 都市개스用原料

(3) 現行 備蓄義務의 主要內容

① 石油精製業者, 輸出入業者, 大販賣業者(當該製品의 年間販賣量이 20,000m³以上인 者) 및 大量需要家(과거 3年間의 輕油 또는 重油의 年

間消費量이 15,000 m³ 이상인 者)

- 政府는 每年 製品마다 備蓄量을 定하며 各企業은 國內市場의 推定市場占有率에 따라 割當된다.
- 精製業者는 일부 原油로 保有할 수 있다.
- 備蓄은 일부 通常操業上 諸요한 在庫와 區分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4) 金融 및 稅制措置

① 石油業界, 政府를 包含한 Complex financing Scheme 과 Joint Industry Fund 의 두 가지 制度가 操業在庫를 넘는 備蓄 코스트를 커버하고 있다.

② Fund는 모두 石油製品의 消費者價格에 부과하는 特別備蓄 부과금의 收入에서 造成되고 있으며 自動車 개소린, 中間製品 및 重油의 現行 부과금은 約 10 ~ 11 ¢/bbl 이다.

(5) 앞으로의 規制

① OECD 統計에 의하면 現在의 備蓄水準은 操業上 諸요한 在庫를 包含하여 約 68 ~ 70日分이다.

② 政府는 다시 備蓄의 增強을 考慮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備蓄 코스트는 特別備蓄賦課金을 두배로 하여 補充할 豫定이다.

◇ 네델란드

(1) 法的根據

政府와 石油企業間의 紳士協定

(2) 對象油種

- ① 개소린, ジェット燃料油 A1
- ② 重油

(3) 現行 備蓄義務의 主要內容

① 大石油會社는 前年度 國內消費實績의 65日分 相當分을 保有하고

② 原油在庫는 制限없는 得率에 따라 備蓄義務로 代替할 수 있으며 또한 原料는 得率基準으로 代替할 수 있다.

③ 西獨, 벨지움과의 사이에 備蓄에 관한 協定이 있음

(4) 金融 및 稅制措置

備蓄 코스트는 政府에 의한 價格構成에 包含되나 別途 方法으로는 表示되지 않는다.

(5) 앞으로의 規制

① EEC 勸告 90日分에 對應해야 할 法的規制가 提出될 豫定임

◇ 덴마크

(1) 法的根據

1964년에 公布한 法律(一般備蓄), 1973年 2月 最低備蓄의 創設, 保有에 관한 命令 制定

(2) 對象油種

- ① 개소린
- ② 輕油
- ③ 重油

(3) 現行 備蓄義務의 主要內容

① 石油精製業者 및 石油輸入業者は 前年度 國內販賣量의 25%의 備蓄義務量이 賦課되고 있다. 但, 上記 義務者가 創設한 덴마크 石油製品備蓄組合이 義務量의 일부를 대신하는 것을 認定하고 있다(義務者 30個社中 29個社 加盟).

② 其他備蓄

o 電力企業

前年同期의 3個月間의 消費量 ÷ 7%의 消費量에 해당하는 數量을 石油 및 石炭으로 備蓄

o 덴마크 鐵道

4個月分 以上的 消費量에 해당하는 量을 石油製品으로 備蓄

덴마크의 石油備蓄比率

(單位: %)

區 分	備蓄聯盟保有分			石油企業 保有分	合計
	一般備蓄	最低備蓄	計		
개소린	12.5	—	12.5	12.5	25
輕油	5	10	15	10	25
重油	—	15	15	10	25

註: %는 前年度 販賣量에 대한 比率

4. 美國의 石油備蓄計劃

(1) 備蓄目標量 및 Schedule

(2) 實施主體

① 國家備蓄(美國에너지省)

② 民間備蓄을 하지 않는 理由

A. 石油製品의 輸入依存度가 높은 地域에 있어서 地方備蓄은 中央備蓄基地보다 遲滯 없이 公平分配가 可能

B. 民間備蓄은 法制上, 行政上의 問題를 招來하고 또한 分散保有에 따른 彈力性의 欲如, 環境問題의 發生, 企業間의 코스트 負擔의 不公平化 등을 招來함

(3) 備蓄現況

① 79년 2月末 現在 岩鹽坑 4個所에 약 7,600 萬 bbl 을 備蓄

② 現在 4個施設에서 準備가 推進되고 있는 데 技術的 理由에서 豫定대로 進行되지 않고 있으며 78年末까지 2.5億 bbl의 備蓄은 困難할 것으로 보인다.

③ 備蓄原油의 油種

所要量의 60% API 32~36 S 1.0~1.9% 所要量의 40% 各種 S 1.0~0.5% 以下

年 度	當初計劃	現行計劃
77. 6. 22	50	0
78. 12. 22	150	250
80. 12. 22	325	500(註)
82. 12. 22	500	-

註: 禁輸가 5個月 계속될지라도 輸入石油分의 45%를 充當할量

(4) 所要資金 및 備蓄豫算

區 分	100 万弗	\$/bbl	%
敷地取得費	143	0.29	1.6
建設費	625	1.25	7.1
原油購入費	7,420	14.84	84.6
運營費	18	0.04	0.2
管理費	72	0.14	0.8
追加輸送費(註)	500	1.0	5.7
計	8,777	17.56	100

註: 備蓄原油의 50%를 美國籍 텅카로 輸送하게 됨에 따라 發生하는 追加費用

o 政府豫算

77년 7.6 億弗

78년 13 億弗

o 海軍豫備油田(NPR)의 原油賣上 代金을 原油購入費의 일부에 充當

不條理와 腐敗를 그대로 놓아둔다면, 外部로부터의 侵略이 아 니라 하더라도 内部의 分裂과 갈등으로 나라의 存立마저 크게 위 혐을 받게 될 것이다.

1980年 9月 1日

全斗煥 大統領 就任辭에서